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전부개정 주요 내용

I 개정 취지

- 한국은행 본부(통화정책국)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 제·개정*에 따라 우리 본부 운용기준을 전부 개정

*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총재 결재) 개정,
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통화정책국장 결재) 제정

II 주요 개정 내용

- (제명) 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으로 변경
- (조문 편제) 목적(제1조), 지원대상(제2조), 사후심사 자료제출(제3조), 평가관리 기준(제4조), 기타 사항(제5조)으로 하고, 각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함
 - (지원대상 및 제외업종) 현행과 같이 하되,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
 - 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의 지원부문을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서 소재·부품 생산기업으로 조정

뿌리기업 지원대상 조정

유형	현행	개정
뿌리기술 전문기업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	(현행과 같음)
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	소재·부품 생산기업(A11)

-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
- ③ 녹색기업 관련 인증서 등의 근거를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변경
- (사후심사시 제출자료) 금리산출표를 추가로 제출하되,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 포함)의 요건을 일부 완화

현행	개정
1. 대출금원장(사본) 2. 사업자등록증(사본) ¹⁾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사본) ¹⁾	1. 대출금원장(사본) 2. 사업자등록증(사본) ¹⁾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사본) ¹⁾
3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 4.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	3. 금리산출표(사본) 4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 5. 기타 인천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주: 1) 현행 - 대출실행일 전 1개월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 전 1주일 이내인 것
 → 개정 - 대출실행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(대출신청일 기준은 삭제)

○ (평가관리(신설))* 아래와 같이 정함

- ① 금리 감면폭(30%)
- ② 제출자료의 정확성(30%)
- ③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- ④ 기타 규정 준수 여부(20%)

* 매분기 직전월(12,3,6,9월)에 직전 3개월간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동 결과에 따라 A등급(20% 이하), B등급(60% 이상), C등급(20% 이하)으로 분류하고, 분기 중 C등급 해당 금융기관 결제모점의 매월 최초 배정액의 10%를 차감하여 A등급(A등급이 없는 경우 B등급) 해당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재배정

Ⅲ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

□ **시행일 : 2024. 4. 1일*** 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

* 당행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요건·절차 등의 변화는 '<참고>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' 참조

○ 다만, **뿌리기업 확인서** 발급 기업 부분은 **2024. 5. 1일 시행**

— 2024. 4. 30일 이전 취급 대출 중 2024. 6. 30일 현재 당행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(→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으로 지원)하고,

- ① 2024. 5. 1일 이후 취급 대출이거나, ② 2024. 4. 30일 이전 취급 대출 중 2024. 6. 30일 현재 미지원 대출인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 (→ 소재·부품 생산기업으로 지원)

○ **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**(인천업무팀-39, 2024. 1. 15.)의 **제출서류도 동일**하게 **개정**하여 아래와 같이 함

현행	개정
1. 대출금원장(사본) 2. 사업자등록증(사본) ¹⁾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사본) ¹⁾ 3. 금리산출표(사본) 4.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	1. 대출금원장(사본) 2. 사업자등록증(사본) ¹⁾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사본) ¹⁾ 3. 금리산출표(사본) 4. 기타 인천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주: 1) 현행 - 대출실행일 전 1개월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 전 1주일 이내인 것
 → 개정 - **대출실행일 전 3개월 이내에** 발급된 것 (**대출신청일 기준은 삭제**)

○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*은 추후 금융기관 앞 안내 예정

* 일반지원부문 전환 시 전환기준,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

<참고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

	현행 운용기준		개정 규정(2024. 4. 1. 이후)
중소기업 소재지	인천, 부천, 김포	기타지역 (서울 제외)	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 (→기타지역은 해당 지역본부 지원대상)
금융기관 소재지	인천, 부천, 김포 또는 서울	인천, 부천, 김포	인천, 부천, 김포 또는 서울
비영리기업 지원 가능 여부	불가능(중소기업 중 영리기업만 지원)		예외적으로 가능 (중소기업 해당 시에만 지원 가능)
지원대상 대출	특별지원부문: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전략·일반지원부문: 운전·시설자금		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또는 만기 5년 이내 시설자금 (전 부문에 통일적으로 적용)
뿌리기업 지원대상	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모두 전략지원부문 대상		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은 일반지원부문(코드: A11) 대상¹⁾
전략지원부문 신용등급	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시 4등급 이하만 허용		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시에도 신용등급 제한 없이 지원 가능
일반지원부문 전환 기준	우선순위제 적용		우선순위제 적용 ²⁾
지원기간	1년 단위 신청		만기 이내이면 제한 없음 (→ 시설자금 지원시 최장 5년)
일몰제 관련	5년(기산일: 2007.1.1.) 예외: 연환산 월평균 누적지원액 20억원까지는 지원 가능		5년(기산일: 2021.4.1.) 예외 없음 (→ 2026.4.1.부터 최초 일몰 도래)
사전심사(전문) 자료제출일	매 익월(T+1월) 12일 (비영업일시 전 영업일, 예외 있음)		매 익월(T+1월) 15일 (비영업일시 다음 영업일)
사전심사 시 소명기한	-		소명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(요청일 포함 시 제4영업일)
사후심사 자료제출일	-		자료 요청 후 5영업일 이내 (통상 익익월(T+2월) 제6영업일)
심사 시 제출자료	대출금원장, 사업자등록증(명), 입증서류(인증서등), 기타서류		현행에서 추가: 금리산출표 사업자등록증(명): 3개월 이내로 변경
평가관리 관련	-		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²⁾ ① 금리 감면폭(30%) ② 제출자료의 정확성(30%) ③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 ④ 기타 규정 준수 여부(20%)

주: 1) 2024. 5. 1.부터 시행되며, 2024. 6. 30. 현재 지원 대출은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

2) 세부 기준 추후 공지 예정